

[별지 제9호서식의(가)] (표지)

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

개 표 록

○○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
주: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때에는"○○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"란 밑에"(제1개표소)", "(제2개표소)"등으로 기재한다.

(내지)

1. 개표관리상황

가. 개 표 소 설 치 장 소	(구·시·군) (읍·면·동) 리 번지 (장소 :)
나. 위 원 참석상황	별지 제1호<위원 참석상황>과 같음.
다. 개표참관인 참관상황	별지 제2호<개표참관인 참관상황>과 같음.

2. 개표상황

가. 개 표 시 간	총 투표합수	개시시각	종료시각
나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상황	별지 제3호<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>와 같음		
다. 개 표 결 과	별지 제4호<사항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조서>와 같음		
라. 특 기 사 항	별지 제5호<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>과 같음		

이 개표록은 사실대로 기록·작성하였음

년 월 일

작성자 (직 위) ○ ○ ○ 인

확인자 사무국장(사무과장) ○ ○ ○ 인

이 개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

위 원 ○ ○ ○
사 유 :

년 월 일

위 원 장	○	○	○	인
부 위 원 장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위 원	○	○	○	인

- 주: 1. 이 개표록은 구·시·군위원회가 작성한다. 다만, 동시실시의 경우 선거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구·시·군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선거(동시선거 포함)에 있어서 개표사무를 관리하는 각 구·시·군위원회가 작성한다.
2.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개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<별지>로 작성하며,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.
3.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되, 개표소를 2개소에 설치하여 보조위원을 둔 때에는 "위원"을 "보조위원"이라 기재한다.
4. 개표록은 대철(별지 포함)한 후,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.
5. 이 개표록은 2통을 작성한다. 다만, 동시실시의 경우 동시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선거의 개표록을 함께 작성하는 때에는 선거마다 1통씩을 추가 작성한다.
6. 동시실시의 경우 "국민투표"는 "○○선거 및 국민투표"로 한다.

<별지 제1호>

위 원 참 석 상 황

직 위	성 명	근 무 시 간	비 고
		부터 까지	

<별지 제2호>

개 표 참 관 인 참 관 상 황

구 분	정당명	참관인 성 명	참 관 시 간 (부터 까지)	비 고
정 당 선 정				
위원회 선정				

- 주: 1. 교체된 개표참관인은 "비고"란에 "○○○과(와) 교체"라 기재하되, 참관 도중에 교체한 때에는 그 교체시각을 기재한다.
2. 교대참관을 하는 경우에는"참관시간"란에 구분선을 그어 그 참관시간을 기재한다.
3. 동시실시의 경우 국민투표와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선거는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57호서식의(가) <별지 제2호>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.

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

투표구명	투표합수	투표용지 교 부 수	투표수	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		비 고
				많음(매)	적음(매)	
합 계						

- 주: 1. 투표수를 기준으로 하여 투표용지교부수의 많음·적음을 산정한다.
2. 국민투표에서 "투표구명"란에는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사전투표(관내·관외) 및 거소·선상투표"로, 재외투표는 "재외투표"로 기재하고, 투표용지교부수"란에 관외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거소투표 등 발송·접수록의 접수수"를, 관내 사전투표는 "투표용지 교부수"를, 재외투표는 "재외투표 발송·접수록에 의한 접수수"를 기재한다.
3. 동시실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.
- 가. 국민투표와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나.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"투표구명"란에는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사전투표(관내·관외) 및 거소·선상투표"로, 재외투표는 "재외투표"로 기재하고,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사전투표(관내·관외) 및 거소·선상투표"로, 재외투표는 "국외부재자투표"로 기재하되, "투표용지교부수"란에 관외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거소투표 등 발송·접수록의 접수수"를, 관내 사전투표는 "투표용지 교부수"를, 재외투표는 "재외투표 발송·접수록에 의한 접수수"를 기재한다.
- 다.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"투표구명"을 "읍·면·동명"으로 기재할 수 있다.
- 라.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"투표구명"란 앞에 "선거구명"란을 설치하고 선거구단위로 "합계"란을 두되, 읍·면·동 단위로 "소계"란을 둔다.
- 마.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한다.

<별지 제4호>

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조서

투표 구명	투표인수 (가+나+다)	투표수 (가+나)	유효투표수(가)				무 효 투표수 (나)	기권수 (다)	비 고
			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						
						계			
잘못투입된 투표지									
계									

- 주: 1. "투표구명"란에는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사전투표(관내·관외) 및 거소·선상투표"로, 재외투표는 "재외투표"로 기재한다.
2.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"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"를 "사항별 투표수"로 본다.
3. 동시실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.
- 가. 선거의 경우 "사항별 투표수"를 "후보자별 득표수"로 하고, "투표인수"를 "선거(투표)인수"로 한다.
- 나.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"투표구명"란 앞에 "선거구명"란을 설치하고 선거구단위로 "합계"란을 두되, 읍·면·동 단위로 "소계"란을 둔다.
- 다.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"투표구명"란에는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사전투표(관내·관외) 및 거소·선상투표"로, 재외투표는 "재외투표"로 기재하고,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및 거소·선상투표는 "사전투표(관내·관외) 및 거소·선상투표"로, 재외투표는 "국외부재자투표"로 기재한다.
- 라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"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"를 "정당별 득표수"로 하고, "○○당 ○○○"를 "○○당"으로 한다.
- 마.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"투표구명"을 "읍·면·동명"으로 기재한다.
- 바. "잘못 투입된 투표지"란은 동시선거의 경우에 작성하며,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있는 때에 그 개표상황을 기재한다.
- 사. 국민투표와 선거별로 작성하고,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한다. 이 경우 선거는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57호서식의(가) <별지 제4호>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.
4. "투표인수"란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의 투표인수에서 사전투표자수와 확정된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수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뺀 투표인수를 기재한다.

<별지 제5호>

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

1. 개표진행에 관한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

일시	시정요구자		시정요구내용	조치내용
	신분	성명		

2.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함의 봉쇄·봉인의 검사의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

구분	참관인		
	정당명	성명	사유
봉쇄·봉인검사			

3. 그 밖의 특기사항

[별지 제9호서식의(나)] (표지)

년

월

일

실시

국민투표

(표지)

집

계

록

〇〇시 · 도선거관리위원회

(내지)

1. 위원장은 월 일 시 분부터 (○○장소)에서 집계사무의 개시를 선포하였음.
2. 개표록에 의하여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.
- 가. 집계결과

① 총투표인수		인
② 투표용지교부수		매
③ 총투표수	유효투표	표
	무효투표	표
	계	표
④ 대조결과	[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]·[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○○매 (많음)·(적음)]	
⑤ 기권수		인

나.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는 다음과 같음.

사 항	유효투표수	비 고
	표	
	표	
	표	
계	표	

다.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명과 그 투표인수

투표구명	투표인수	사유	비고
	명		
	명		
계	명		

라.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찬성 또는 반대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으며, 그 상황은 별지 <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>와 같음.

3. 월 일 시 분 집계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집계록 2통을 작성하여 이를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.

위원 ○ ○ ○

사유 :

년 월 일

위 원 장 ○ ○ ○ (인)
상임위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위 원 ○ ○ ○ (인)

- 주 : 1.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<별지>로 작성하여야 하며,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.
2.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.
3. 집계록은 대철(별지 포함)한 후,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,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.
4. 이 집계록에는 작성근거가 된 개표록을 합철하여 관리한다.
5.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“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”를 “사항별 투표수”로 본다.

<별지>

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

구·시·군 위원회명	투표인수 (가+나+다)	투표수 (가+나)	유효투표수(가)			무효 투표수 (나)	기권수 (다)	투표율 (%)	비고
			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						
					계				
합계									

주 : 1. 사전투표수, 거소·선상투표수, 재외투표수(국외부재자투표수+재외투표인투표수)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()안에 사전투표수, 거소·선상투표수,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.
2. 투표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.
3.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“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”를 “사항별 투표수”로 본다.

[별지 제9호서식의(다)]

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

국 민 투 표 록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(내지)

1. 위원장은 월 일 시 분(○○장소)에서 국민투표결과 확정 및 국민투표록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.

2. 집계상황

가.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① 총투표인수		인
② 투표용지교부수		매
③ 총투표수	유효투표	표
	무효투표	표
	계	표
④ 대조결과		[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] · [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○○매 (많음) · (적음)]
⑤ 기권수		인

나.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투표구명	투표인수	비고
	명	
	명	
	명	
계	명	

다.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는 다음과 같음.

사 항	유효투표수	비고
	표	
	표	
:	:	

라.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인수, 투표수,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, 무효투표의 총수를 각각 공표하였으며, 그 상황은 별지 <국민투표결과조서>와 같음.

3. 국민투표결과 확정상황

- 가. 우리 위원회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을 공표하였음.
- 나. 우리 위원회는 투표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을 공표하였음.
- 다. 우리 위원회는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음을 공표하였음.
- 라. 우리 위원회는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를 공표하였음.

4. 월 일 시 분 국민투표결과 집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이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 낭독하고
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.
다만,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·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.

위원 ○ ○ ○
사유 :
년 월 일

위원장 ○○○ (인)
상임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위원 ○○○ (인)

- 주: 1.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<별지>로 작성하여야 하며,
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하되, "3항"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작성
하지 아니한다.
2.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.
3. 국민투표록은 대철(별지 포함)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 부분에 날인하고,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

<별지>

국민투표결과조서

시·도명	투표인수 (가+나+다)	투표수 (가+나)	유효투표수(가)				무 효 투 표 수 (나)	기 권 수 (다)	투 표 율 (%)	유 효 투 표 율 (%)	찬 성 투 표 율 (%)	비 고
			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									
						계						
합계												

- 주: 1. 사전투표수, 거소·선상투표수, 재외투표수(국외부재자투표수+재외투표인투표수)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
하고 따로 그 수를 ()안에 사전투표수, 거소·선상투표수,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.
2.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찬성투표율(%)을, 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정책 국민
투표의 경우 유효투표율(%)을 작성한다.
3.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“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”를 “사항별 투표수”로 본다.